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학교 현장교육·실습 운영 안내

1. 운영개요

- 가. 사업명 : 2025학년도 2학기 현장교육·실습
- 나. 실습기간 : 4개월[2025.9.1.(월) ~ 12.31.(수)]
- 다. 실습형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라.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 마. 주관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032-835-9619)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항목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권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	전체 실습시간 중 최소 10% ~ 최대 25%	전체 실습시간 중 25% 초과 ※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 임금의 최소 75%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가능
적용대상	학교주도형, 실습기관 주도형	학교 주도형 ※ 실습기관 주도형은 불가능
실습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기준 ※ 실습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해야 함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가능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 가능	주 4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 실습생의 실습 시간을 실습기관의 전일제 근무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해야함
기업부담 실습비	교육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함	
정보공시	해당	해당안됨

3. 개설가능 교과목

구분	실습기간	이수구분/학점	비고
현장교육실습(IV)	16주	전공심화 12학점	
현장교육실습(V-1),(V-2)	4개월		

4. 운영 일정

단계	수행업무	일 정	수행주체						비고
			센터	학생	기업	학과	담당교수	학사팀	
준비-1	학생상담 ※센터발굴기업의 경우 신청 전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상담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자소서작성 상담 진행(선택사항)	전 일정	○						STARinU 상담신청
준비-2	기업섭외·안내	~ 2025.7.11.(금) ※신청기간중기업섭외및 안내 가능	○	○	○	○	○	○	온라인 시스템
준비-3	①운영계획서, ②직무기술서, ③사전서면점검서제출	~ 2025.7.11.(금) ※신청기간중운영계획서 등 입력가능			○				온라인 시스템
준비-4	학생신청 (이력서, 자기소개서)	~ 2025.7.27.(일) ※기업별에 따라 조기 마감가능		○					온라인 시스템
준비-5	기업-학생 매칭 및 선발	~ 2025.8.8.(금)	○	○	○	○			온라인 시스템
준비-6	①현장실습지원신청서, ②현장실습개설교과목추천서제출	~ 2025.8.14(목)		○		○	○		공문
준비-7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 2025.8.21.(목)	○					○	센터에서 일괄신청
준비-8	기업에 시작 안내 공지 ※협약서, 학생출근일, 출근장소등 안내요청	~ 2025.8.22.(금)	○		○				메일, 공문 등
준비-9	수강료 납부	2025.8.25.(월) ~ 8.29.(금)		○					
준비-10	상해보험 가입	2025.8.25.(월) ~ 8.29.(금)	○						
준비-11	사전교육(필수참여) ※off-line교육:출석 (취업교육+현장실습운영안내) ※on-line교육:LMS (안전교육+성희롱예방교육)	2025.8.27.(수)	○	○					2가지 모두필수
준비-12	수강료 납부 확인	2025.8.29.(금)	○					○	메일
준비-13	3자(기업/학생/대학) 동의 협약서 체결 ※온·오프라인협약가능	~ 2025.8.29.(금)	○	○	○				기업 직인 등록
진행-1	산재보험가입증명서제출	실습시작 후 1주일 이내			○				온라인 시스템
진행-2	주간보고서 작성	실습시작일부터 종료시 까지		○					온라인 시스템
진행-3	출근부 작성	실습시작일부터 종료시 까지			○				온라인 시스템
진행-4	학생_중간점검 계획 및 실시	실습시작일부터 4주차	○	○					SNS 안내
진행-5	담당 교수 실사지도 및 지도 결과 입력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접속 (교수/조교 로그인)→중간점검관리 →중간점검 보고서 입력→2025년 2학기 일반현장실습 선택 후 보고서 작성	실습기간 중	○	○	○		○		기업 협의
종료-1	기업 평가서등 제출 : ①출근부, ②기업평가서, ③만족도조사	~ 2025.12.26.(금)			○				온라인 시스템
종료-2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 ①주간보고서, ②결과보고서, ③만족도조사	~ 2025.12.26.(금)		○					온라인 시스템
종료-3	성적평가및입력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평가진행	~ 2025.12.31.(수)				○	○		통합정보 시스템
종료-4	학생및기업지원비지급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 받은 경우 학생지원금 미지급 ※기업은 운영계획서에 기업지원금 요청 시 지급	실습종료 마감 후 1개월 이내	○						

※ 운영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실습지원금 기준

지급기관	지급금액	내 용										
대학 (대학→학생)	400,000원 (1개월 기준)	-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종료 익월까지 지급 - 미 이수한 학생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실습지원비를 2025년 최저 임금 이상 수령시 제외됨										
실습기관 (기업→학생)	실습시간 및 교육 시간 비율 등에 따 라 상이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5일, 8시간 실습 시 실습비 기준 하한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교육시간비율</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r> <tr> <td>최저 실습비</td> <td>1,572,210</td> <td>1,677,020</td> <td>1,781,830</td> <td>1,886,650</td> </tr> </table> <p>※ 원단위 이하 절상</p> <p>▶ 산출식 : 최저임금 시급 (2025년 10,030원) x 월 실습시간 수(209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p> <p>-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 실습지원비 산정 기준은 현장실습지원 센터로 별도 문의 요망</p>	교육시간비율	25%	20%	15%	10%	최저 실습비	1,572,210	1,677,020	1,781,830	1,886,650
교육시간비율	25%	20%	15%	10%								
최저 실습비	1,572,210	1,677,020	1,781,830	1,886,650								
<p>※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시간을 비율로 곱한 금액 이상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해야함</p> <p>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 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p> <p>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p> <p>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p> <p>※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 실습 일정 변경으로 실습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p> <p>※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5년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p>												

6. 실습기관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요건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함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해야 함(현장교육담당자 필수 배정)
참여불가 기관	- 학생 개인이 섭외한 기관 -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관 -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및 교육 시간 배정이 불가능한 기관 - 학교와 무관한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형태

7. 출석관리 및 실습생 휴일 보장

가. 출석관리

- 공휴일, 만근휴일 및 실습기관 사정 등에 의해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을 관리함
-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는 출석(지각 포함),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결석,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등은 휴일로 관리

나. 실습생 휴일 보장

- 실습기간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함
- 휴무 예시 :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예비군훈련일, 경조사, 사업장 휴무일 등

8.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실습 가능 여부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함

* [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

-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
- ② 실습기관이 재택현장실습을 학교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대학에 제출

9.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032-835-9619

[자주 묻는 질문] - 실습기관

1. 교육시간 비율이 무엇인가요?

실습기간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100 중 교육시간과 실습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표준현장실습은 교육시간 비율 선택이 의무입니다. 교육시간 비율 선택을 10%~25% 사이로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100%에서 교육시간 비율을 제외한 것이 직무 실습시간 비율입니다. 따라서, 실습기관은 학생들에게 직무실습시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이상의 실습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4주 동안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교육시간 비율을 10%로 선택하면,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나머지 90% 직무실습시간에 대한 90만원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업무 중, 교육시간을 따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을 대학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교육의 예시는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예) 학생에게 메일 발송을 맡겼는데, 학생이 메일을 작성하는 법과 프로세스를 모를 때,
교육 :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 학생에게 관련 프로세스와 메일 작성 양식 및 주의점 등을 알려준다.

직무실습 수행 : 실습학생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서 직접 메일을 작성해본다.

3. 교육시간 증빙은 실습기관이 별도로 해야 하나요?

실습기관이 증빙할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주간보고서에 교육내용과 실습내용을 각각 적어 제출합니다. 또한 교육부 양식으로 시행하는 중간점검조사에도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시간의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교육시간 비율 선택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실습비)와 직결되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을 요청드립니다.

4. 전공 관련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교육부 고시와, 운영 매뉴얼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작성 시, 실습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된 전공을 특정하거나, 최소한 관련 계열까지는 특정해야 합니다.

5. 직무 관련 수행부서 또는 담당 근로자가 없다면?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실습 직무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 및 피드백이 가능한 부서 및 업무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해당 부서 및 업무 담당자가 없을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 CI 또는 Brochure 등의 제작에 있어 디자인 부서와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의 디자인 관련 학과의 학생을 활용하여 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등이 없었으나, 대학으로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 및 협조를 받은 경우, 학교 주도형 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됩니다.

만약,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적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면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됩니다.

학교 주도형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한 학교 외 다른 학교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한 사항이 없을 경우 참여 의뢰한 학교와 표준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운영형태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학교 주도형 형태로 이미 다른 학교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협의된 상태라면, 복수의 학교와 협의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하면 됩니다.